

주택 확보 기회 (계속)

- ◇ HUD 장관은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노령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결정했습니다.
- ◇ 62세 이상의 노령자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 단지의 거주주택 중 80% 이상에서 55세 이상의 노령자가 최소한 한명 거주하고 있으며 55세 이상의 노령자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경우.

도움이 필요한 경우

루이빌 인간관계 위원회 (Louisville Metro Human Relations Commission) (502-574-3631)로 연락해 주십시오.

- ◇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성별, 나이, 종교, 장애, 가족 관계, 성적 취향 또는 성별 인식 등의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 ◇ 공정 주택 법규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경우.

다음 신청서를 작성해서 본 브로셔 뒷면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고객명: _____

주소: _____

도시, 주, 우편번호: _____

전화번호 (주간): _____

전화번호 (야간): _____

이메일 주소: _____

모국어: _____

차별 대우 항목을 체크해 주십시오.

- 주택 공공시설 고용



Louisville Metro Human Relations Commission
410 West Chestnut Street, Suite 300A
Louisville, KY 40202



귀하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공정 주택

410 W. Chestnut Street, Suite 300A
Louisville, KY 40202
574-3631 phone • 574-3577 fax
574-4332 TDD hrc@louisvilleky.gov

루이빌 도심 인간관계 위원회 (Louisville Metro Human Relations Commission)



보호 대상은?

공정주택법규 (Fair Housing Act)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택 매매, 임대, 용자 신청 등과 관련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 인종 또는 피부색
- ◇ 출신국가
- ◇ 종교
- ◇ 성별
- ◇ 가족사항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밑에서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자녀 및 임산부와 18세 미만의 청소년 양육권을 가진 자 포함)

◇ 장애

루이빌시 (Louisville Metro)는 다음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 성적 성향
- ◇ 성별 인식

대상 주택은?

공정주택법규 (Fair Housing Act)는 대부분의 종류의 주택을 포괄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공정주택법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소유주가 거주하는 4호수 이하의 단지
- ◇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매각 또는 임대하는 1가족 주택
- ◇ 55세 이상을 위한 주택
- ◇ 특정 조직 또는 사유 클럽이 운영하는 회원 전용 주택

그러나 루이빌시 (Louisville Metro) 법규에 의거해서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모든 종류

금지 사항은?

주택 매매 및 임대와 관련해서 보호 대상 계층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 주택 임대 또는 매매 거절
- ◇ 주택 관련 협의 거절
- ◇ 주택 매매 또는 임대 기회 박탈
- ◇ 주거지 제공 거절
- ◇ 주거지 매매 또는 임대 관련 계약 조항, 조건 또는 특별사항을 다르게 설정
- ◇ 상이한 주택 서비스 또는 시설 제공
- ◇ 주택이 검사, 매매 또는 임대 대상이 아니라고 거짓말함
- ◇ 이윤을 목적으로 소유주에게 매각 또는 임대하라고 설득함
- ◇ 상기 계층에 대한 선호, 제한 또는 차별을 내포하는 통보, 성명 또는 광고의 작성, 인쇄 또는 출판 (행위 원인 제공 포함) 또는 그러한 선호, 제한 또는 차별 의도

장애가 있는 경우는?

본인 또는 관계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 ◇ 주요 활동에 지장을 주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청각, 보행 및 시각 장애, 암, 만성적 정신 장애, 에이즈, 에이즈 관련 문제 및 정신 지체)가 있는 경우. (또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경우)

상기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주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 본인의 비용으로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 또는 공용 공간을 적정하게 변경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주는 임차인이 해당 주거 공간을 비우는 시점에서 변경된 부분을 원상복귀하는 조항에 합의하는 경우에만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 ◇ 장애인의 해당 주택 거주를 위한 규정, 정책, 관행 또는 서비스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예: 애완동물을 허가하지 않는 건물의 경우 시각 장애인의 맹도견 허가.

예: 충분한 공간이 있는 미지정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보행이 불편한 임차인이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근처에 전용 주차 공간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요구를 수용해야 합니다.

*** 그러나 타인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사람 또는 현재 불법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의 거주 기회

고령자 전용 건물 또는 단지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 사항에 근거한 차별 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18세 이하의 자녀가 다음과 같은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부 또는 모
- ◇ 자녀의 법적 양육권이 있는 사람
- ◇ 부모 또는 법적 양육권자가 지정하는 부모 또는 법적 양육권자의 허가를 받은 사람

가족 사항 보호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의 아동의 법적 양육권이 있는 사람도 해당됩니다.

면제: 고령자 대상 주택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족 사항 관련 차별 법규 면제 대상입니다.